

I 개회 선언

1. 일 시 : 2021. 6. 23.(수), 15:00 - 17:30
2. 장 소 : 법무부 차관회의실
3. 출석위원 : 위원장 : 법무부차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위 원 : 이영희, 강호성, 장연화, 윤강열, 홍승희, 김용진,
백용매
4. 출석간사 및 서기 : 간사 서기관 김진아, 서기 교감 최충민
5. 개회선언

지금부터 2021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II 안건 상정보고

위 원 장 : 먼저 간사는 안건 상정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안건상정에 앞서 예비회의 수형자 출석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 가석방 예비심사부터 실질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교정기관의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직접 청취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여 심사자료 검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형자 출석대상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석방회의 심사대상은 총 940명입니다.

적격 검토자는 636명으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검토
하였습니다.

부적격 검토자는 187명으로, 수형태도가 불량하거나, 보호관계가
미약한 자와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가 높은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부적격 검토하
였습니다.

신중검토는 총 19명으로, 범죄내용 등 고려 7명, 환자 2명,
심층면접대상자 10명입니다.

검토결과, 대상인원 총 940명 중, 적격 636명(67.7%), 부적격
187명(19.9%), 보류 98명(10.4%), 신중검토 19명(2.0%)으로
각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가석방 적격 안전을 심사한 후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 안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Ⅲ 안전 심사

1. 적격 안전심사

위 원 장 : 먼저 “적격 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검토
의견과 적격 안전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앞서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치료조건부 가석방 심사대상자 1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6번 ■■■■■입니다. 이 사람은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집행률 91.0%, 잔형기 1개월 14일입니다. 피해자인 지인 2명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중식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만성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초빙 진료 등을 실시하고 투약중입니다. 출소 후에는 ■■■■■에서 치료받을 계획이며 본인과 보호자의 치료조건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 원 :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현재 치료 중인 수형자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고, 본인과 보호자의 치료조건 이행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것보다는 치료조건을 부과하여 가석방 허가하는 것이 재범예방 및 사회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636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논의할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437번 ■■■■■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한 자로 ■■■■■하였습니다.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1년 만에 재범하였고, 도박개장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고 도박개장 등에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437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 원 : 632번 ■■■■■는 ■■■■■하고 피해자가 132명으로 다수입니다.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잔형기가 많이 남아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종료한 전력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전원 : 피해자의 수는 많지만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632번 ■■■■■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632번 ■■■■■에 대한 삼사의견 표결)

위 원 장 : 632번 ■■■■■는 적격 의견 3명, 부적격 의견 4명, 보류 의견 1명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할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전원 : 없습니다.

2. 부적격 안건심사

위 원 장 : 다음으로 부적격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부적격 의견은 총 187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부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부적격 안건 중 659번 ■■■■■는 부적격 안건의 마지막에 별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부적격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656번 ■■■■■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좌석에 동승한 이 사람의 처이고 유족의 합의 및 선처탄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기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는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형기가 1개월 19일로 짧고, 알코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656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 712번 ■■■■■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벌금형 외 범죄경력이 없고 2년 5개월 동안 성실하게 작업하였고 ■■■■■입니다. ■■■■■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전원 :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712번 ■■■■■는 보류로 의결하겠습니다. 간사는 부적격에서 보류로 변경된 사안의 경우 다음 달에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767번 ■■■■■은 ■■■■■이고 동종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지만 연속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전원 :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767번 ■■■■■은 보류로 의결하겠습니다. 간사는 712번 ■■■■■와

동일하게 다음 달에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전원 : 없습니다.

간 사 : 마지막으로 659번 [REDACTED]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REDACTED] 하였던
자로, 판시1) [REDACTED]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과 판시2) [REDACTED]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REDACTED]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고령이고 수형생활태도 및 보호관계 양호하나, [REDACTED]
[REDACTED], 미회복금액이
과다한 점 등 고려 부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저는 659번 [REDACTED]의 사건에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659번 [REDACTED]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중 한 분께서 659번 [REDACTED]의 가석방 심사
한 해 위원장 역할을 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 659번 [REDACTED]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파장이 크고 [REDACTED]
[REDACTED] 잔형기간도 많이 남아있어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659번 [REDACTED]는 부적격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4. 신중검토 안건심사

위 원 장 : 다음으로 신중검토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간 사 : 신중검토대상자는 총 19명입니다.

먼저, 922번 ■■■■■입니다. 이 사람은 ■■■■■

■■■■■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19만 4,900원을 선고 받아 집행률 88.9%, 잔형기 6개월 24일이고,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21. 6. 3. 어지럼증, 호흡곤란, 체중감소 등 증상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했고 대장암 4기로 항암방사선 치료 및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환자입니다.

■■■■■ 73세의 고령이며 대장암 4기 등 건강상태 고려 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대장암 4기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형집행률이 90%에 근접하고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등 고려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2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3번 ■■■■■입니다. 이 사람은 ■■■■■

이었던 자로,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범(뇌물)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 9,240원을 선고받아 집행률 85.7%, 잔형기 6개월 29일이고, 경비처우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수형생활태도 및 보호관계 양호하나,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 등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
습니다.

위 원 : [REDACTED]
[REDACTED]
[REDACTED] 등 고려
하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3번 [REDACTED]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4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REDACTED]
[REDACTED]로, 특정범죄가중법(국고등손실)
및 위증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91.8%, 잔형기 2개
월이고, 경비처우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형집행률이 91.8%이고 수형생활태도 및 보호관계 양호하나,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REDACTED]
[REDACTED]
[REDACTED]
등 고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4번 ■■■■■는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5번 ■■■■■입니다. 이 사람은 ■■■■■
■■■■■이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
법(뇌물)로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집행률 92.2%,
잔형기 4개월 23일이고,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
니다.

■■■■■하였습니다.

형집행률이 92.2%이고 수형생활태도 및 보호관계 양호하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
■■■■■
■■■■■
■■■■■하였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5번 ■■■■■는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26번 ■■■■■입니다. 이 사람은 뇌물수수로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88만을 선고받아 집행률 96.5%, 잔형기
26일이고, 경비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하였으나, ■■■■■

■ 노사간 명백히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926번 ■은 ■
■하였고, 본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6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7번 ■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로 징역 1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 잔형기 2개월 8일이고, 경비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경력이 많으나, 중증 치매로 대화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염증수치가 높아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6월 10일 가족이 벌금을 납부하여 추가신청 되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범죄경력이 많기는 하나 75세 고령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치매환자입니다. 더 이상의 형집행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7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8번 ■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89.2%, 잔형기 3개월 9일이고, 경비

피해회복 노력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많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되어 결장암 3기 후반으로 형집행정지 후 20.11.12. 재입소 하였습니다. 현재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신중검토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29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86.4%, 잔형기 1개월 20일이고, 경비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redacted] 범죄경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미성년
 자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신중
 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29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30번 ■■■■■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85.7%, 잔형기 7개월이고, 경비처우급 3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

■■■■■하였습니다. 또한, ■■■■■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수형자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강제퇴거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동종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0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31번 ■■■■■입니다. 이 사람은 성매매, 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률 92.3%, 잔형기 1개월 12일이고, 경비처우급 3급,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동종의 범죄경력, 성폭력미수전력, 과거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사이버공간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리검사 결과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자극 추구 경향이 높고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해 빈궁 상황이나 위기 시 기생적 생활양식 또는 범죄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강간수용 통념 검사 결과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왜곡된 성인지가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거침입절도 및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범죄의 내용이나 심리검사 결과 등으로 보아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층면접관의 의견대로 부적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1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32번 ■■■■■입니다. ■■■■■

■■■■■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1975년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79년경 ■■■■■

■■■■■이 있고, ■■■■■

■■■■■ 심리검사결과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낙관적이지만 방해를 받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짜증과 화가 나다가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

■■■■■ 8년간의 수형생활 동안 단 한 건의 규율위반사례가 없었으며, 합의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6년

5개월간 교도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교도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동료 수형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수용생활태도가 매우 양호한 점, 가족들의 꾸준한 접견 및 전화통화 등 지속적인 교류로 보아 보호의지가 양호한 점, 심리검사결과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모두 저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1975년 이후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층면접관의 의견대로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2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33번 ■■■■■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93.4%, 잔형기 4개월 1일이고,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 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복통을 겪자 이 모든 일이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타서 생긴 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 자신의 범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로 내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출소 후의 환경이 입소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피해적 사고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시까지는 출소 후 한국교화복지재단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건설업체에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교화복지재단에서 이 사람의 망상장애 전력을 이유로 인수의사를 철회한 상황이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인수의사를 문의하였으나 수용인원 과다로 인수를 거부하여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부재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범죄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다투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보호관계가 미약합니다.
심층면접관의 의견대로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3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34번 ■■■■■입니다. ■■■■■
■■■■■ 집행률 92.0%, 잔형기 4개월 26일이고,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이 사람이 65년 이상을 살면서 벌금 외에는 범죄경력 없고, 4년 7개월간 수형생활 하면서 단 한차례의 규율위반사례가 없었으며, 3년 5개월간 교도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수형생활태도도 양호한 편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병원비를 지불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반사회적인 성향이나 정신병질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폭력성 및 공격행동 경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갈등이 빈번해졌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으며, 결국 처와 자녀들이 가출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척추협착증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적 요인까지 겹치자 상실감과 분노감, 고립감이 심화되어 본범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68세의 고령이며 허리통증 등으로 신체적 불편감이 심하고, 출소 후 다시는 자녀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행동화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였고 목발을 사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범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층면접관의 의견대로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4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35번 ■■■■■입니다. 이 사람은 본건 주거침입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동종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 잔형기 1개월 20일이고, 경비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심리검사결과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피상적 관계를 유지할 뿐 친밀한 관계의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다소 고립된 양상을 나타낸 자이기에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느끼는 무로움을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상대방의 놀라는 반응을 보며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정서적 문제 가능성이 낮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는 비교적 양호하고, 더욱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수용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등 반성적 사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위원 : 잔형기가 1개월 20일 밖에 남지 않았고 기피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층면접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 의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5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36번 ■■■■■입니다. ■■■■■이고,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간병을 홀로 전담하게 된 1년 6개월의 기간 중 실질적인 학대 기간은 4~5개월 전인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중에도 주 4회 부를 휠체어에 태워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병원진료를 하는 등 간헐적 학대와 자기 후회의 감정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발생 당시 26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로 빈곤한 경제사정과

누적되는 간병 스트레스 및 모와도 연락이 단절되는 등 홀로 고립되어 가며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점과 모가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여러 참작사유가 있고, 출소 후 [REDACTED]이라는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REDACTED]

[REDACTED]하지만, 여러 참작사유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위 원 : 오랜기간 동안 혼자 부의 간병을 하다 본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와 여동생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집행률이 다소 낮지만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 고려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6번 [REDACTED]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937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93.2%, 잔형기 5개월 26일이고,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범행 당시 폭력행위가 내연남에게 집중되고, 전처에게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수용생활 중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히 독학으로 초졸 검정고시에서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모와 형 등 가족인 보호자의 보호의지 또한 확고하며, 출소 이후 [REDACTED] 종사 예정인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미성년인 두 자녀를 피해자 중 한 명인

전처가 양육하고 있어 피해자와 접촉으로 인한 갈등 및 잠재적 폭력 성향이 발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집행률이 93.2% 이상 경과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 또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위 원 : 범죄경력이 다소 있으나 수형생활태도 및 교정처우 성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층면접관의 의견도 긍정적인 점 등 고려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7번 ■■■■■는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38번 ■■■■■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66.1%, 잔형기 1년 7일이고, 경비 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
■■■■■ 고령이나 당뇨 등으로 합병증을 동반한다거나 순환기 질환 등으로 추가적인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 소내의 적절한 치료와 식이요법 등으로 병증 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중한 범죄 내용에 비해 형집행률이 66.1%에 불과한 점, 자신의 친자인 막내아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임에 따라 귀주예정지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전처와의 접촉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위 원 : 잔형기가 과다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접촉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심층면접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938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939번 ■■■■■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 경비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으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 범행 장소에 가게 된 이유가 주변 상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한다거나, 전자충격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야식집을 운영하였음에도, 취객들의 소란 때문에 호신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범행의 이유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으나, 여러 심리검사 결과, 대부분 정상범주 내로 평가되었고, 특히 우려되었던 성범죄 위험성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낮음’ 으로 평가된 점, 본건 범행 전까지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피작업장인 취사장 봉사원, 개방 교도소에서의 사회적응훈련 등에서 성실히 수형생활을 해온 점 및 형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 : 기피작업장인 취사장에서 오랜기간 작업하였고, 사회적응훈련생으로 선발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보호관계가 양호한 점, 심층면접관의 조사내용이 긍정적인 점 등 고려 적격 의견

입니다.

위원전원 : 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939번 ■■■■■은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마지막으로, 940번 ■■■■■입니다. 이 사람은 과실치사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아 집행률 82.5%, 잔형기 2개월 4일이고, 경비 처우급 3급, 재범예측지표 3급입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심층면접관이 면접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관 : 소년 시절의 비행경력, 이후 범죄경력, 사회생활 경력, 심리 검사 결과 등으로 보아 사려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책임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교도관도 이 사람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만큼 모성애와 책임감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의 동거남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 우울증 치료를 약속하는 등 보호의지와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가 매우 강한 점, 이 사람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형기 종료일까지 2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가석방이 되지 않아도 2개월 후에는 동거남과 함께 아이를 양육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위 원 : ■■■■■ 정상적으로 양육한 아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사려깊지 않고 모성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생후 100일된 아이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후에 모와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전원 :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940번 ■■■■■은 부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IV 폐회 의결

위원장 :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정기 가석방 심사 결과 총 940명 중 적격 645명, 부적격 195명, 보류 100명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 회의는 2021. 6. 23.(수), 15:00에 시작하여 17:30에 마칩니다. 끝.